

2023. 7. 17.(월)

10:0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가적 입양 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사 회 최형진 아나운서
- 좌 장 김향은 교수(고신대학교)
- 인사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 발 제 **입양으로 살펴보는 한국 근현대사**
소현숙 교수(동아대학교)
기록과 정보공개
이주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령에 따른 기록관리와 이관
나창호 연구관(국가기록원)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김 건 교수(전북대학교)
- 패 널 양동민 교수(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주관 |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23. 7. 17.(월)
10:0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가적 입양 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사 회 최형진 아나운서
- 좌 장 김향은 교수(고신대학교)
- 인사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 발 제 **입양으로 살펴보는 한국 근현대사**
소현숙 교수(동아대학교)
기록과 정보공개
이주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령에 따른 기록관리와 이관
나창호 연구관(국가기록원)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김 건 교수(전북대학교)
- 패 널 양동민 교수(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주최 |

국회의원 김미애

주관 |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일정표

// 2023.7.1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시간	내용	비고
식전 안내 (09:55~10:00)	행사 고지, 안내 방송 ※ 주제발표 및 토론자 무대 앞줄 착석	사회자 최형진 아나운서
1부: 사전행사		
개회·국민의례 (10:00~10:02)	개회,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10:02~10:05)	주요 내빈 소개	
개회사 (10:05~10:07)	개회사	김미애 의원
환영사 (10:07~10:10)	환영사	정익중 원장
축사 (10:10~10:13)	축사	
장내 정리 (10:13~10:20)	장내 정리(기념촬영)	
2부: 토론회		
토론회 안내 (10:20~10:25)	토론회 취지 안내	사회자
주제발표 (10:30~11:30)	▶ 입양으로 살펴보는 한국 근현대사 소현숙 (동아대학교 교수) / 15분 ▶ 기록과 정보공개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15분 ▶ 법령에 따른 기록관리와 이관 나창호 (국가기록원 연구관) / 15분 ▶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김 건 (전북대학교 교수) / 15분	
11:30~11:35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	
토론 (11:35~11:50)	좌장 - 김향은 (고신대학교 교수) 토론자 - 소현숙 (동아대학교 교수) -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나창호 (국가기록원 연구관) - 김 건 (전북대학교 교수) - 양동민 (전북대학교 교수)	
질의응답 및 폐회 (11:50~12:00)	폐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국가적 입양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입양 아동을 위한 통합 기록관리 지원체계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실 동아대학교 소현숙 교수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 연구위원님, 국가기록원 나창호 연구관님, 전북대학교 김건 교수님과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전북대학교 양동민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전국 입양가족들과 함께 '편견없는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인 된 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과 관련된 기록·자료의 보관 및 입양관련 정보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해 입양인의 알 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지자체·입양기관·아동복지시설 등 분절적으로 보관됐던 입양기록물의 통합 관리·보존을 위한 첫 논의를 오늘 토론회에서 시작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보호출산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산모와 아동의 정보 관리·보존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가적 보호 체계 안에서 입양기록을 보존·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입양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7.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장 정익중입니다.

길고 긴 과정 끝에 마침내 지난 6월 30일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헤이그협약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가의 책임하에 국제 입양되는 모든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로 전환되어 국제 입양은 국내 입양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 한정되며 입양기록물과 입양과 관련된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가 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맞춰 지자체,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나눠서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 25만여 건을 이관받아 아동과 관련된 모든 기록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입양과 아동 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은 시기입니다. 입양에 대한 정책이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입양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을 대비하여 체계적인 통합 기록관리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미애 의원님과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3. 7. 17.

아동권리보장원장 정익중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국가적 입양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미애 의원님과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김향은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발표를 준비해주신 김건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학과장님과 나창호 국가기록원 연구관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최근 입양아동 및 실종아동, 학대 피해 아동 관련 기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신력 있는 관계 기관에서 안전한 관리를 바라는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되었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제·개정 되었습니다.

향후 법이 시행되면 입양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현재 지자체,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나뉘어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들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약 25만여 건의 입양기록물과 입양인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면, 입양인의 알 권리 및 입양기록물의 통합 관리 보존 서비스가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마련된 시의적절한 토론의 자리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록물 관리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고견을 세심히 살피고, 입양 기록 체계 구축과 입양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7.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국가적 입양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미애 의원님과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아동복지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양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지자체,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산발적으로 보관되어왔던 입양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이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보존 할 수 있게 되어 입양인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 제·개정은 아동 중심의 입양 제도를 정착시키고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하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열띤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 시행과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그간 부정확한 입양정보 기록과 낮은 정보공개율로 인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없었던 입양인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축사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입니다.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입양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미애 의원님과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고견을 나눠주실 김향은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김건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학과장님과 나창호 국가기록원 연구관님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당국의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아동들이 유기되거나 살해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단 태어난 아기부터 지켜내자’는 취지로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입양아동 관련 기록, 실종아동 기록, 학대피해아동 등 관련 기록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입양아동들의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길 바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인 것입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제·개정된 바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현행 지자체,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나눠서 보관중인 입양기록물 관리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됩니다.

약 25만여 건의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가 일원화되면 체계적인 기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권리 보장 및 입양기록물의 통합 관리·보존·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행사에 국회와 입양기관 및 입양가족, 각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만큼 국가 차원의 기록 관리 역할 필요성과 일원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분들의 알토란같은 제언들을 세심히 청겨서 「국가적 입양기록 체계 구축」을 비롯,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과 아동 인권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주제발표 1. 입양으로 살펴보는 한국 근현대사	1
소현숙 (동아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기록과 정보공개	11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3. 법령에 따른 기록관리와 이관	25
나창호 (국가기록원 연구관)	
주제발표 4.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37
김 건 (전북대학교 교수)	



입양으로 살펴보는 한국 근현대사

| 소현숙 (동아대학교 교수)

입양으로 살펴보는 한국 근현대사

소현숙(동아대학교 교수)

입양이란?

-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
- 입양의 관념, 법, 제도, 관행은 시대에 따라 변화
- 가족제도, 여성의 지위, 아동에 대한 관념, 경제적 여건, 공동체의 상황 등에 따라 변화

전통적 입양제도와 관행(조선시대)

- 공식적 양자제도(양반층)
 - 대를 잇기 위한 양자
 - 성(姓)이 같은 남성 친족 중에서 양자를 들임
 -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종법 질서의 유지를 목표
- 비공식적 양자관행(업둥이)
- 고아/기아에 대한 대책
 - 친족책임 원칙,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
 - 민가에서 자식, 노비, 고공(雇工)



한국전쟁과 전쟁고아의 양산(1950년대)

- 전쟁으로 인해 전쟁 고아, 미아, 기아 양산
 - 남한만 5만여명 추정
- 전쟁고아 수용을 위한 고아원 설립, 외원 기관의 원조로 운영
- 전후 원조의 감소로 재정난 심화
- 수용 고아들의 탈출
 - 거리에서의 부랑아 생활



미국인의 한국고아 입양에 대한 관심 증대

- '유모차 공수 작전(Operation kiddy car)'
 - 미공군 목사 러셀 블레이즈델과 던 헤스 대령,
서울의 고아 900명 구출
 - 자서전과 영화로 널리 알려짐
 - ※ 전쟁 고아 입양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 촉발
- 해외 입양의 시작
 - 미국의 '난민구호법', '고아법', '이민법'
등이 영향을 미침



혼혈아동과 해외입양의 시작(1950년대)

- 국내입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입양에 점차 의존
- 해외입양은 혼혈아로부터 시작
 - 유엔군/미군 주둔과 혼혈아의 증가
 - 국적법(1948): 국적은 부계를 통해 대물림, 혼혈아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어려움.
 - 혼혈아동 중 국적 없는 아동이 67.6%(1959)
 - 이승만, "혼혈 아동은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야 한다"
- 한국아동양호회 설치 (1954)
 - 보건사회부 혼혈아를 해외 입양 보내기 위한 전담 기구

해리 홀트: 한국 고아의 아버지

-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영향
- 한국 전쟁고아 지원, 이후 고아 입양 시작
- 난민구제법(Refugee Relief Act, 1953): 한가정에 2명 입양 허용
- 8명의 고아를 입양, 국회를 상대로 투쟁, 홀트 법(Holt Bill, 1955) 통과
- 입양을 '인류애적 사랑'의 실천으로 간주
- 서울에 <리씨빙 홈> 건립 원조(1955)
- 미국시민들의 관심 확대



입양법의 제정

○ 1957년 <어린이 헌장> 제정

- "어린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가정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1960년 신민법 제정

- 기존의 양자에 관한 법 대폭 수정
- 비혈연적 입양 허용, 아들이 있는 경우, 성(姓)이 달라도 입양 가능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요보호 아동 해외입양 법적 규정 마련

국내 입양 실적 저조

- 고아원에 대한 해외 원조의 중단 우려 입양 모색
- 새가정 찾기 운동(1960년대 초)
 - 국내 입양 권장을 위한 한국정부의 캠페인
 - 보호시설 아동 10,730명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운동
 - 무자녀 가구 조사, 입양 권유
 - 그러나 강고한 부계혈통주의로 인해 실적 저조

해외입양 증가 (1950~1960년대)

- 한국의 부계혈통주의 + 미국의 '구원으로서의 고아 입양'
 - 국내 입양의 저조, 미국으로부터 입양 요청 쇄도
 - 1955년~1964년까지 2,800여명의 혼혈 고아들이 미국으로 입양
 - 미국은 '비제한이민법' 제정(1956), 효력 무제한 연장(1961) * 고아는 이민쿼터제와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 시킬 수 있는 효력
- 한미 양국의 이해 충족
 - 미국은 구원자로서의 사명감 충족
 - 한국은 요보호 아동 보호 비용 감소, 소위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아동문제의 해소
- 혼혈아로부터 비혼혈아동으로 입양 대상자 점차 확대

미혼모 모성 박탈과 해외입양 확대(1970년대 이후)

○ 정상가족 규범의 강화와 '미혼모' 낙인

-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비난과 낙인
- '미혼모'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

○ 해외 입양기관들의 미혼모 상담사업 시작

○ 미혼모를 모성의 영역으로부터 추방

- 아기를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 '정상가족'에 입양시키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인식 확산

○ 비혼혈 아동의 해외입양 증가

해외 입양 감축 조치(1970년대)

○ 북한의 비난: "새로운 수출품"

○ 정부의 해외입양 감축 조치

-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입양 중단, 1985년까지 전면 중단을 목표로 단계별 감축 계획 수립
-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 (1976)

*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입양 촉진, 민법상 성과 본 불변 원칙을 포기, 양친의 성을 따르는 것 가능



해외입양 확대(1980년대)

○ 전두환 정권의 수립, 완전개방 정책으로 변경

- 미국, 유럽 등지에서 한국 고아 입양 요청 증가
-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 활성화를 이유로 해외입양 전면 개방
- 연평균 해외 입양 6천 5백여명(71%), 국내 입양 2천 6백여명(29%)(1981~1990)

○ 올림픽 개최와 입양정책의 변화

- '세계1위의 고아수출국' 지적으로 정부, '입양사업 개선 지침' 마련, 국내 입양 활성화 모색(1989)
- 국내입양전문기관 '성가정입양원' 설립(1988)

※ 국내입양 전문기관으로 발족하였다는데 의의가 큼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2000년대)

○ 정부의 국내입양 장려정책 도입

- 입양 장려금 지원, 입양 휴가제 도입, 입양 아동 보육료 지원
- 입양의 날(5월 11일) 제정, 입양주간 설정
- 호주제 폐지(2005), 친양자제도 도입, 양부모의 권한 강화

○ 사회각계 유명 인사들의 국내 입양 홍보

▶ 국내입양 확대, 해외 입양을 넘어섬(2007~)

입양자의 권리운동과 관련법의 정비(2000년대)

○ 귀환 입양인 당사자 및 지원 조직 출현

- 1970년대 이후 해외로 입양 보내졌던 아동들의 귀환
- 친부모 찾기와 출생기록에 대한 알 권리 요구



입양관련법의 정비, 국가 역할 강화(최근)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정부 서명

○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2023)

- 입양에 관한 모든 사항 국가 주도,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 결연 후 정기적 상담과 지원, 입양 정보 공개 청구 가능,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에만 해외입양 허용, 국가간 협력 체계 구축, 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경우 정부가 아동의 귀환 및 보호조치 마련 의무화, 입양기록물의 및 정보공개청구 일원화



기록과 정보공개

|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기록과 정보공개

2023.7.17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HROUGH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목 차

국가적 입양 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1 들어가며
-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및 쟁점
- 3 정책적 대안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HROUGH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1. 들어가며

입양인에게 있어서 입양정보의 의미

정체성에 대한 열망, '삶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과정

"3살 정도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었어요. ... 한국이 너무 그리웠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 입양된 나이에 관계없이, 한국을 떠나는 건 많은 부분을 잃은 듯한 느낌일 거예요. ... 가족을 만난 지금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주연 외, 2022, 국외입양인 인터뷰 결과)

'인생의 퍼즐 맞추기', 가족을 찾고 만나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닌, 내 존재의 정당성을 알고 싶은 욕구

"내 인생의 퍼즐 맞춘다는 느낌. 나의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받고 싶은 생각. 나의 존재가 정당하지 않은 결과였는가라는 의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그 가족과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친생가족찾기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가족을 찾고, 만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다시 살겠어 라는 마음으로 친생가족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주연 외, 2022, 입양 전문가 인터뷰 결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친구들이 대부분 가족 관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라서... (입양인들은) 한국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태어난 건지 그 이후에 있었던 일 알고 싶어해요." (이주연 외, 2022, 입양 전문가 인터뷰 결과)

1. 들어가며

입양인에게 있어서 입양정보의 의미



정체성에 대한 열망, '삶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과정

"3살 정도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었어요. ... 한국이 너무 그리웠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 입양된 나이에 관계없이, 한국을 떠나는 건 많은 부분을 잃은 듯한 느낌일 거예요. ... 가족을 만난 지금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주연 외, 2022, 국외입양인 인터뷰 결과)



'인생의 퍼즐 맞추기', 가족을 찾고 만나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닌, 내 존재의 정당성을 알고 싶은 욕구

"내 인생의 퍼즐 맞춘다는 느낌. 나의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받고 싶은 생각. 나의 존재가 정당하지 않은 결과였는가라는 의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그 가족과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친생가족찾기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가족을 찾고, 만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다시 살겠어 라는 마음으로 친생가족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주연 외, 2022, 입양 전문가 인터뷰 결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친구들이 대부분 가족 관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라서... (입양인들은) 한국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태어난 건지 그 이후에 있었던 일 알고 싶어해요." (이주연 외, 2022, 입양 전문가 인터뷰 결과)

1. 들어가며

입양인의 삶에서 입양정보의 역할

 입양인의 자아정체성, 애착형성에 긍정적 영향(권지성 외, 2010)

- ▶ 입양인의 높은 자아정체감은 심리적 행복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줌(Basow et al., 2010)

 '입양인은 출생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높이며, 입양부모를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 향상(Schechter & Bertocci, 1990; Howe & Feast, 2001)

- ▶ 특히 국외 입양인에게 있어 인종 및 국적 등을 기반으로 한 정체감의 형성에 도움을 줌(Schechter & Bertocci, 1990)

1. 들어가며

입양인의 '출신을 알 권리' 와 관련된 국제규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의 출신의 알 권리 보장의 중요성 천명, 단 보장범위는 협약국의 입법례에 따르도록 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30조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지고 있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2)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가의 법이 인정하는 한 적절한 지도에 따라 아동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입양 -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30조에 관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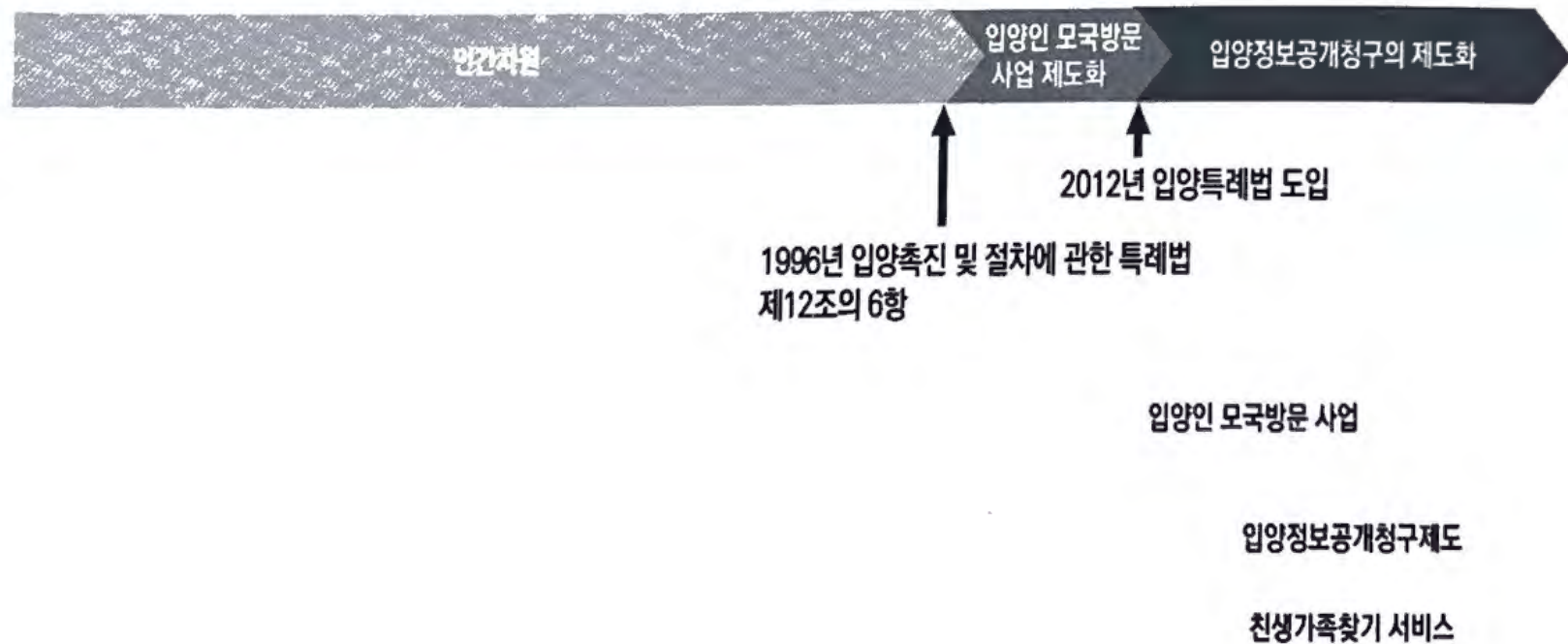
'점점 더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가족을 찾고자 하고, 점점 더 많은 친생부모들이 입양된 자녀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만큼, 정보 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단, 아동이 자신의 출생 정보를 확인할 권리는 '입양을 보낸 자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친부모의 권리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협약 제30조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허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아동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제한한다고 설명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 권고사항(2010, 2015)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상담 및 준비과정에서부터 '아동이 자신의 출신을 찾을 가능성'을 다룰 것을 권고, 아동이 자신의 출신을 찾고자 할 때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권고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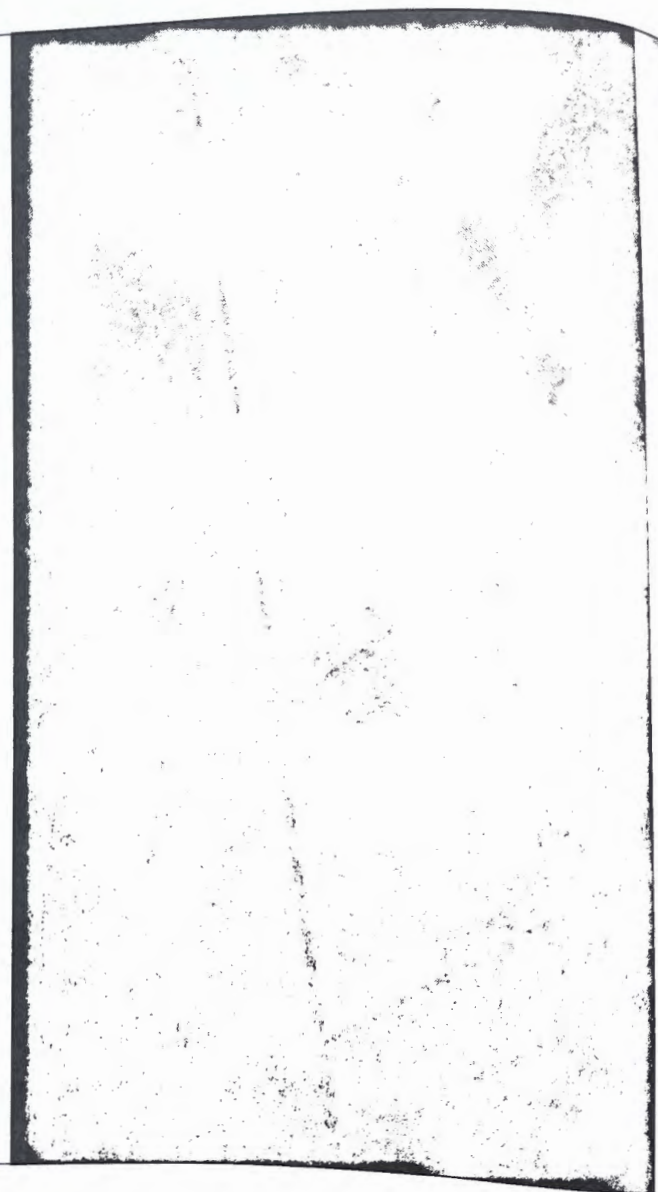
정부의 입양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의 흐름



정부는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실시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및 쟁점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공개되는 입양정보의 내용

- 입양인의 배경정보에 해당하는 비식별

비식별정보

입양인의 배경 정보(시행령 제13조)

-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 입양일 및 입양 사유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명칭을 말한다)
-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시설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

✓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연관된

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비식별정보를 추출하는 방안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및 쟁점

입양정보공개 신청 자격

- 「고아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및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입양된 입양인(만19세 이상은 직접 신청)
- 고아입양특례법 : 시행령 상 입양인가를 위하여 개인이 법원에 호적등본, 아동 및 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입양기관이 직접 인가 받을 때에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1977년 입양특례법 : 시행규칙 제11조3항 입양알선기관이 입양관계서류의 작성 및 비치할 것을 규정

19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입양정보의 영구보존, 입양관계서류로 입양아동 뿐 아니라 양부모의 서류도 포함

2012년 입양특례법: 입양정보의 기록, 기록의 공공화, 입양기록의 영구보존



법령상 기록보존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영구보존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입양기록이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

✓ 따라서, 19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입양된 입양인은 규정 상 신청자격이 있으나, 입양의 기록과 기록의 보존이 어려웠던 시기에 입양되었으므로, 온전한 입양정보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및 쟁점

공개되는 입양정보의 내용

- 입양인의 배경정보에 해당하는 비식별정보와 친생부모의 인적정보에 해당하는 식별정보로 구분됨(식별정보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

비식별정보

입양인의 배경 정보(시행령 제13조)

-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 입양일 및 입양 사유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식별정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

친생부모의 인적정보(시행령 제13조)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연관된 기록물(예: 친생모 상담기록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카드 혹은 상담기록지)에는 보다 상세한 입양사유가 적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를 공개하기 어려움. 입양정보 중 공개가능한 비식별정보의 내용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연관 기록물을 통해서 비식별정보를 추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및 쟁점

공개되는 입양정보의 원본 기록은 어디에?

- 입양정보의 원본 기록물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폐업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정부기관을 통해 입양된 경우)에 각각 보관
- 단,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51개 항목으로 전산화된 입양정보를 보유

구분	전산화된 항목의 내용
입양인	성명(입양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시, 출생장소, 혈액형, 건강이상, 건강이상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인수일자, 기관고유번호, 가족유형, 장애등급판정, 보호 유형, 조치일자, 조치구분, 국적(국외입양), 국외협력기관(국외입양), 성명(입양후), 입양 신고일(국내입양), 출국일(국외입양), 국적취득일(국외입양), 파악이력, 아동고유번호
친생부모	친부성명, 친부 주민등록번호, 친모성명, 친모 주민등록번호, 주소(친모), 연락처(친모), 취약 계층구분(친모), 입양사유(친모), 입양동의여부(친모), 정보공개여부(친모), 장애등급유무(친모), 주소(친부), 연락처(친부), 취약계층구분(친부), 입양사유(친부), 입양동의여부(친부), 정보공개여부(친부), 장애등급유무(친부)
입양부모	양부성명, 양부생년월일, 양모성명, 양모생년월일, 양부국적, 양부종교, 양부직업, 양부학력, 양모국적, 양모종교, 양모직업, 양모학력, 양친주소, 양친 연소득, 양친 친자유무현황, 양친 연락처, 양친 주택종류, 양친 부채, 양친가정조사신청일

- ✓ 전산화된 입양정보만으로 입양인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가의 문제, 입양 원본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받는 등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 기록물에 제시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공개할 것인가가 원본 기록물 보유기관의 재량하에 있다는 문제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및 쟁점

입양인

입양기록보유기관(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청구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및 접수, 이력 관리 목적

· 아동권리보장원:
청구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및 접수, 이력 관리 목적

· 아동권리보장원:
청구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및 접수, 이력 관리 목적

· 아동권리보장원:
청구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및 접수, 이력 관리 목적

입양인

입양기록보유기관(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청구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및 접수, 이관,
반려 처리

(해당청구 입양기관
해당구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정보공개 청구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구비서류/입양정보/
청구 이력 확인

반려/이관

접 수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입양기록 검토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기록 요청

- 입양기관: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 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소재지 파악요청, 친생부모
정보 확인 불가 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소재지 확인 필요성 등록

**입양기록 확인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 검토

친생부모 정보 확인
소재지 확인 요청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친생부모 정보 부재
소재지 확인 필요성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행정정보공동이용협약
이용하여 친생부모의 소재지 확인 실시

소재지확인(아동권리보장원)
행정정보공동이용협약 활용
지자체 등 협조 요청

- 입양기록보유기관: 친생부모 등의 여부
확인위한 1차 우편 발송(당기, 전보)

친생부모 등외자부 확인
우편 발송

- 입양기록 보유기관: 입양인에게 정보공개
청구권통보서 제공

- 친생부모 소재지 확인 불가 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추가적
가족찾기 지원 사항 안내

**공개청구
정보제공**

추가적 가족찾기 지원
연락처 확보/신종아동찾기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지원

- 친생부모 확인 시
정보공개청구통보서 제공, 유전자 검사 지원

- 입양기관보유기관: 확인이 없을시
2차 우편발송

- 친생부모 확인 시 정보공개청구통보서 제공

유전자 검사

**공개청구
정보제공**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무응답

거절통보

친생부모 등외자부
확인 우편 발송(2차)

- 입양기록보유기관: 확인 없을 시
3차 우편발송

- 친생부모 확인 시 정보공개청구통보서 제공

유전자 검사

**공개청구
정보제공**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무응답

거절통보

친생부모 등외자부
확인 우편 발송(3차)

- 입양기록보유기관: 정보공개청구통보서
제공

유전자 검사

**공개청구
정보제공**

**정보공개청구
결과통보서
제공 및 입양인에게
안내**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무응답

거절통보

입양인

입양기록보유기관(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청구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및 접수, 이관, 반려 처리
- (※청구·입양기관
제청·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정보공개 청구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구비서류/입양정보/
청구 이력 확인

반려/이관

접 수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입양기록 검토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기록 요청

입양기록 확인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 입양기관: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 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소재지 파악요청, 친생부모
정보 확인 불가 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소재지 확인 비요청 등록

입양기록 검토

친생부모 정보 확인
소재지 확인 요청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친생부모 정보 비파악
소재지 확인 비요청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친생부모의 소재지 확인 실시

소재지확인(아동권리보장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지자체 등 협조 요청

- 입양기록보유기관: 친생부모 동의 여부
확인위한 1차 우편 발송(통지, 전보)

친생부모 동의여부 확인
우편 발송

- 입양기록 보유기관: 입양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진행통보서 제공
- 친생부모 소재지 확인 불가 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추가적
가족찾기 지원 사항 안내

**공개청구
정보제공**

←

추가적 가족찾기 지원
안내서 제공/제공받지
않고 입양인 입양인 미 제공

- 친생부모 회신 시:
정보공개청구통보서 제공, 유전자 검사 지원
- 입양기록보유기관: 회신이 없을 시:
2차 우편발송
- 친생부모 회신 시: 정보공개청구통보서 제공

**유전자 검사
공개청구
정보제공**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무응답

거절당함

친생부모 동의여부
확인 우편 발송(2차)

- 입양기록보유기관: 회신 없을 시:
3차 우편발송
- 친생부모 회신 시: 정보공개청구통보서 제공

**유전자 검사
공개청구
정보제공**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무응답

거절당함

친생부모 동의여부
확인 우편 발송(3차)

- 입양기록보유기관: 정보공개청구통보서
제공

**유전자 검사
공개청구
정보제공
정보공개청구
결과통보서
제공 및 신원확인**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무응답

거절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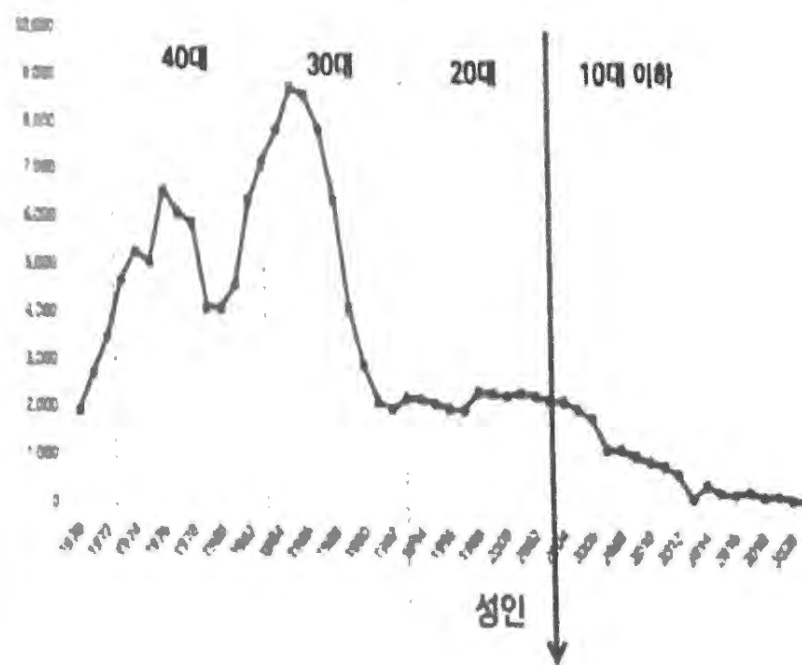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및 쟁점

입양정보공개청구의 이용자 현황

청구연도	청구건수	
	청구건 기준	청구인 기준
2019	2,175	1,241
2020	1,449	960
2021	1,327	921
2022	2,045	1,153

선행연구에 따르면 입양인의 50% 이상이 생애 한번 이상은 친부모를 찾고자 하며 (Selman, 1999),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친생가족을 찾고자 하는 비율은 31.6%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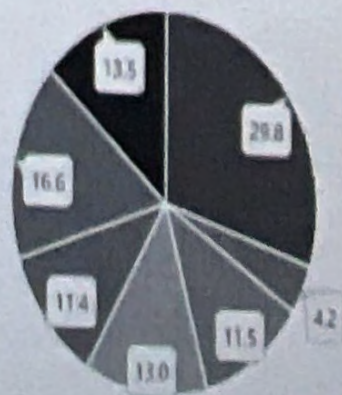
입양정보공개청구의 잠재수요(국외입양인)



- ✓ 2004년 이전 입양(국내 및 국외)된 아동의 수는 총 226,052명이며, 이 중 31.6%는 67,816명 수준 ~ 50%는 113,026명 수준으로 현재 30대 후반~40대의 입양인 수가 가장 많은 편임을 감안한다면, 입양정보공개 신청을 원하는 입양인의 수는 중단기적으로는 유지 혹은 증가, 장기적으로는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추정 가능, 단, 정확한 추정은 이제까지의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 건을 청구인기준 데이터로 분석한 이후 파악 가능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및 쟁점

입양정보공개청구의 결과 (2019~2021년 청구자 중 결측(60명)을 제외한 3,062명)



- 부모 중 한명이라도 동의
- 모두 거절시킴 무응답
- 한명은 거절시킴 무응답, 한명은 연락 안 됨
- 모두 연락 안 됨
- 한명은 비요청 한명은 거절시킴 무응답
- 한명은 비요청 한명은 연락 안 됨
- 부모식별정보비요청

✓ 입양정보공개청구 결과 친생부 또는 친생모 중 한 명이라도 인적정보 공개에 동의한 비율 29.8%, 56.7%는 친생부모 중 한명이라도 소재지 파악을 요청하였으나, 어느 누구의 정보도 공개되지 못한 경우 - 비공개 사유 중 무응답, 연락 안 됨 등의 비율도 낮지 않은 편

2.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현황 및 쟁점

입양정보공개제도에서 기타 기록과 관련된 쟁점

●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된 입양정보: 기록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을 키움

“정보가 진짜인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서류에는 결혼했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서류에는) 안 했다고 써 있기도 하고...” (이주연 외, 2022, 입양인 인터뷰 결과)

● 기록의 오류: 기관과 기록에 대한 불신을 키움

“(제가 입양기관에서)받았던 정보는 전체 정보가 아니었고, 입양배경정보에 대해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헤어졌는데, 헤어졌고, 엄마가 임신할 때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런 얘기와 관련된 정보 조금만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힘들었어요. ... 00기관에 사회복지사가 확실하게 말하길 엄마가 그동안 저를 전혀 찾지 않았고, 제 외에 다른 아이도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제 가족들이 그동안 저를 찾았어요. 제 사진도 두 장 있었어요. 아무도 제게 얘기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주연 외, 2022, 입양인 인터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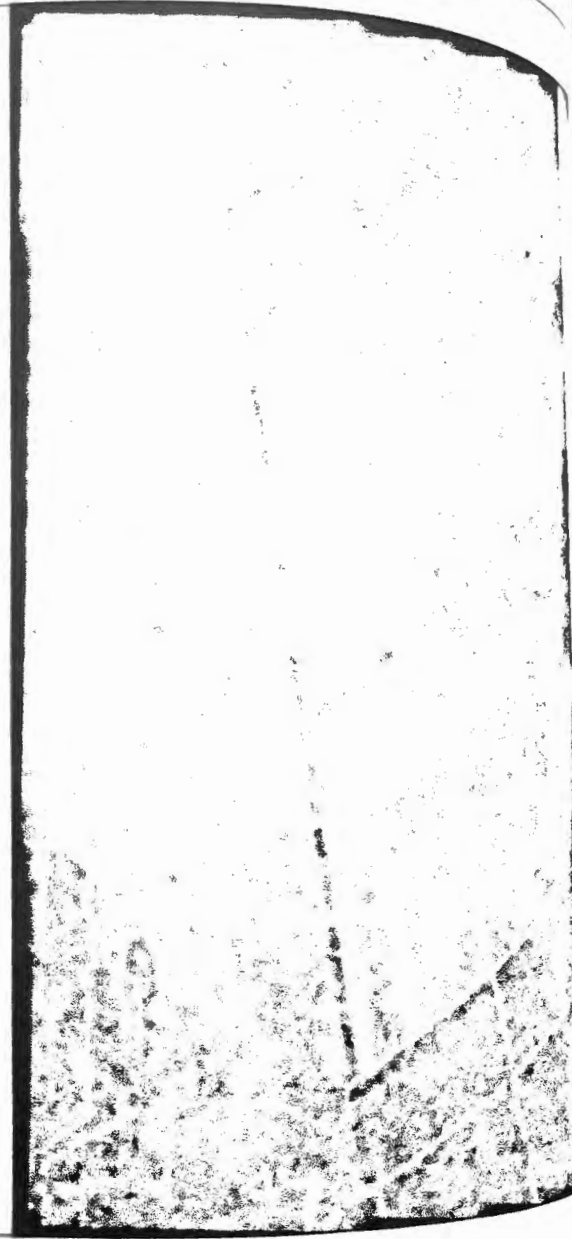
● 방문횟수, 동행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제공 정보의 양과 질: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움

“갈 때마다 정보 조금씩 더 알려주는 ... 처음에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그전 혼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 보여줄 수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첫 번째 갔을 때 (자료를) 복사해주지 않았어요. ... 두 번째는 ... 한국말 잘하고 한국문화도 잘 알고 있어서 그때 조금 더 받았어요. ... 세 번째는 같이 입했던 남자분들과 같이 갔는데, 한국인들이었어요. ... 문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요. ...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있어야 되는데” (이주연 외, 2022, 입양인 인터뷰 결과)

● 과거의 불법적 관행을 알게 됨: 기관과 기록에 대한 불신을 키움

“제 생각에는 해외로 입양되어온 고아들은 사실은 부모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저희를 해외로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등록부 상에 저희를 고아로 만들어야 했던 전제, 사실은 부모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모를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주연 외, 2022, 입양인 인터뷰 결과)

3. 정책적 대안



3. 정책적 대안

01. 수집 및 공개 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확대

현행

- ✓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기재된 입양배경정보 공개
- ✓ 입양관련 서류 상 작성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기준

3. 정책적 대안

[참고] 국외의 입양 정보 운영 사례

▶ 입양관련 정보 보관 기관

미국, 캐나다의 경우 각 주에 입양정보 보관 책임이 있으며, 캐나다는 각 주의 중앙당국이 입양정보 보관, 스웨덴은 지자체와 입양기관이 함께 보관, 노르웨이, 필리핀, 베트남 등은 중앙당국이 정보 보관

▶ 입양 배경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무/관행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르웨이 정부가 친생가족찾기 담당기관에 자금 지원, 필리핀은 신청인을 돌보았던 기관이나 시설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양정보 공개 과정 중 불법적 실무/관행이 발견될 경우 조치

각국의 법이 규정한대로 처리. 입양의 불법적인 관행은 많은 시간이 흘러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는 시점에 드러남. 미국의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 등록소(public complaint registry)를 운영. 제출된 이의는 입양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때 고려됨(법원 외부)

▶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보호 및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구분

대부분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식별정보는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가능, 따라서 비식별정보를 가능한 충분하고도 쉽게 입양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단, 노르웨이의 경우 식별과 비식별정보를 모두 성인이 된 입양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정책적 대안

01. 수집 및 공개 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확대 및 서식화

현행

- ✓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기재된 입양배경정보 공개가 어려운 상황
- ✓ 입양관련 서류 상 작성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기준 미비



개선방안

- 1 입양인의 욕구에 따라 입양절차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2 입양 당시에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내용 중 신원정보를 제외한 사항이 아동보고서에 비식별정보로 모두 기재될 필요
- 3 입양관련 서류 상 기록의 충실도를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작성지침 마련 필요
- 4 입양이 이루어질 당시, 아동보고서 상 친생가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수집하도록 개선 필요

3. 정책적 대안

03. 업무 책임 기관의 확립

현행

- ✓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
 - 최초 청구는 입양기관, 재청구는 아동권리보장원
 - 친생부모 개인정보보호 ↔ 입양인의 알 권리 사이에 판단 및 조정 주체가 모호
 - 불법적 실무와 관행 발견 시 조치 규정 미비



개선방안

-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책임기관으로 역할하도록 개정 필요
- ② 친생부모 개인정보보호 ↔ 입양인의 알 권리 충돌 시, 판단의 역할을 법원에 맡기는 방안(미국 일부 주, 독일)
- ③ 불법적 실무나 관행 발견 시 조치에 대해 명문 규정 추가

3. 정책적 대안

04. 업무의 표준화

현행

- ✓입양인에게 제공하는 비식별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식 상이
- ✓입양당시 수집하는 비식별정보의 내용 및 유형 미흡
- ✓미성년 입양인 대상 서비스의 비표준화
- ✓서비스 서식이 기관마다 다름



개선방안

- 1 비식별정보 표준화, 원본열람 가능하도록 개선, 입양서류 간에 기록된 내용 차이/미흡 시 업무수행지침 마련
- 2 수집하는 입양아동 배경정보 중 비식별정보 추가, 첨부서류로 의료 보고서, 심리(학교) 보고서, 친부모 관련 보고서 등 첨부 제안
- 3 미성년 입양아동 대상 서비스 표준화(심층 대면상담 후 원하는 정보를 선택 제공)
- 4 유전자 뱅크 도입을 위한 법제도 마련 고려, 입양 전 입양인이 머물렀던 장소, 돌보았던 시설, 가정, 사람 등에 대한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참고문헌

이주연, 안소영, 류정희, 김재민, 주하니 (2022).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가족찾기 업무 표준화 연구, 아동권리보장원·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법령에 따른

| 나창호 (국가기록원

감사합니다.

2011.03.11
11:00:00

03

법령에 따른 기록관리와 이관

| 나창호 (국가기록원 연구관)

법령에 따른 기록관리와 이관

2023.

나장호

(국가기록원 연구관)

강의순서

I 기록물관리의 이해

II 주요 단계별 기록물 관리

III 질의 및 응답

IV 질의 및 응답

1. 기록물 관리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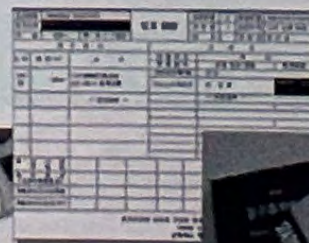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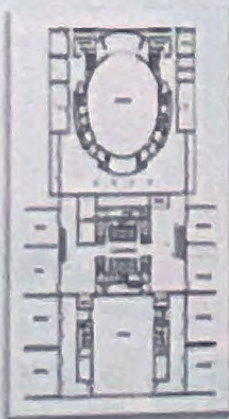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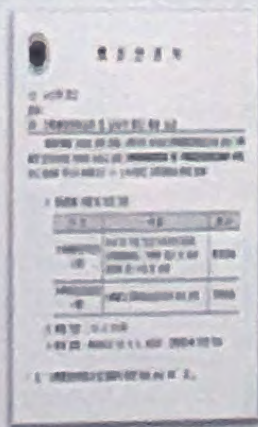
1-1. 기록물의 개념

기 록 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정보로써 생산·접수·유지하는 것
[산업표준규격 KSX ISO 15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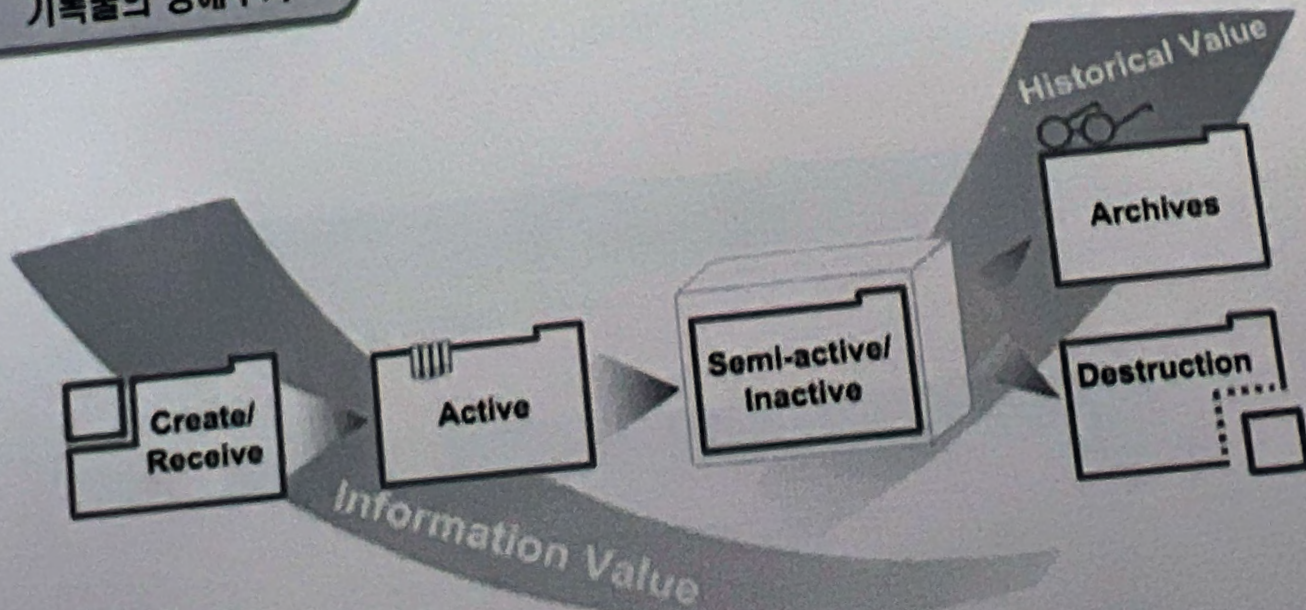
기 록 물 유형



1. 기록물 관리의 이해

1-2. 기록물의 생애주기

기록물의 생애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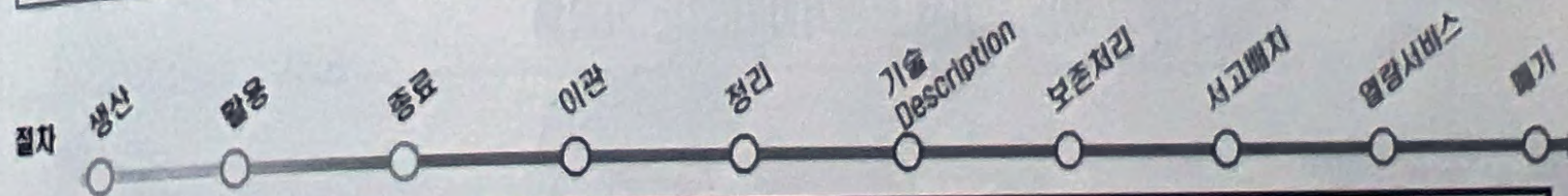


1. 기록물 관리의 이해

1-3. 기록관리의 절차

기록물관리 절차

기록물의 생산 · 분류 · 정리 · 이관 · 수집 · 평가 · 보존 · 공개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현용기록관리

주체	처리부서
대상	모든 기록물
목적	업무추진
이관	2년 이내
폐기	불가/ 의견제시
시스템	전자문서/업무관리시스템

준현용기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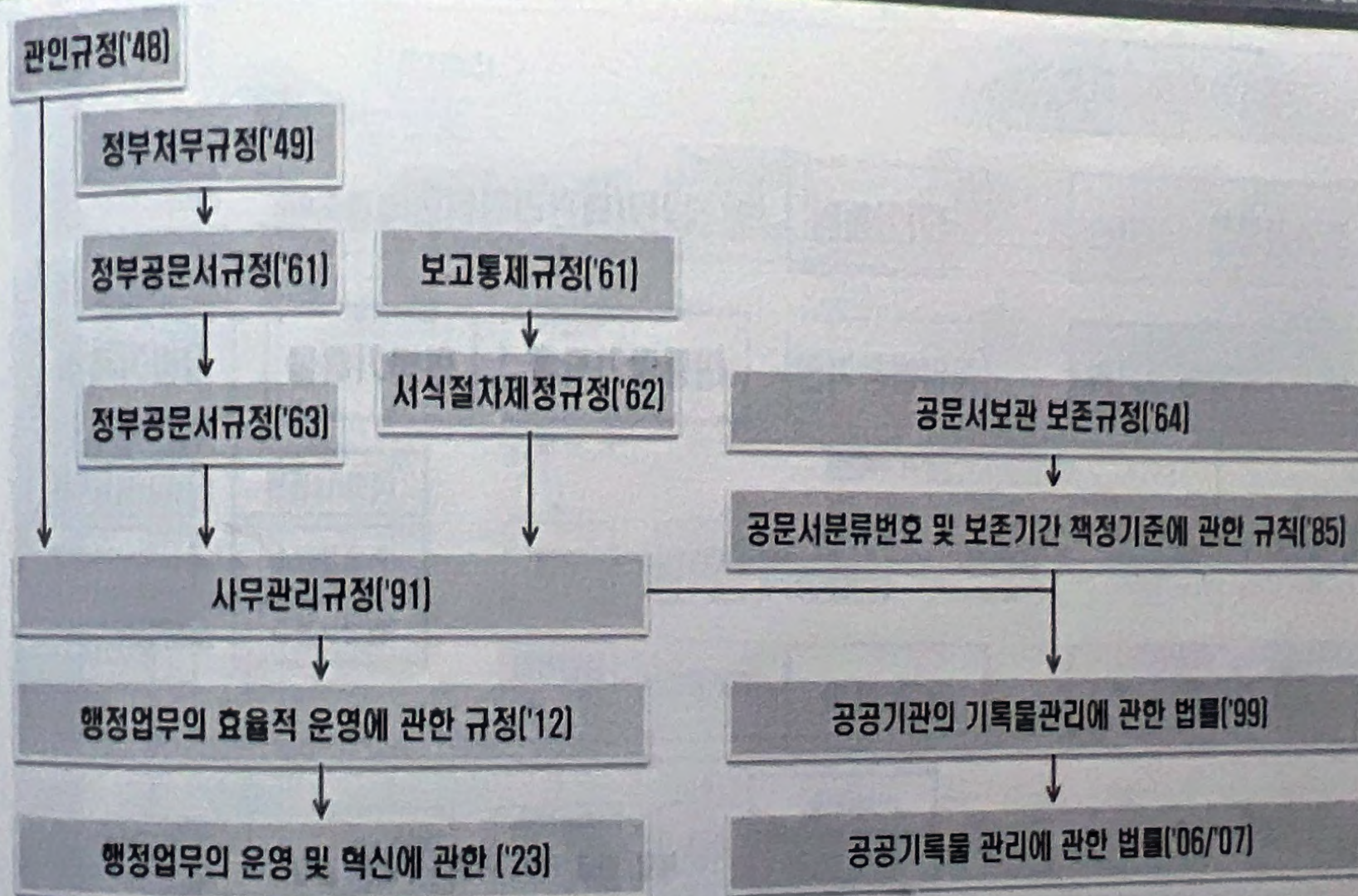
기록관/기록관리부서
모든 기록물
보존 및 활용
10년 내
10년 이하 평가심의/폐기집행
기록관리시스템

역사기록관리

기록관/기록관리부서
30년 이상 영구보존기록물
보존 및 활용
주기적 재평가 필요
영구기록(사료)관리시스템

1. 기록물 관리의 이해

1-4. 관련 법령의 변천



1. 기록물 관리의 이해

1-5. 기록관리법의 목적과 구성



목적

-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관리 중인 기록물과 민간 및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법률 구성

기록관리 조직

- ❖ 기록물 관리기관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제2장 및 제3장

기록물관리

- ❖ 기록물의 생산
- ❖ 기록물의 관리
- ❖ 비밀기록의 관리

※ 제4장, 제5장, 제7장

활용 및 표준화

- ❖ 공개열람 활용
- ❖ 표준화 및 전문화

※ 제8장, 제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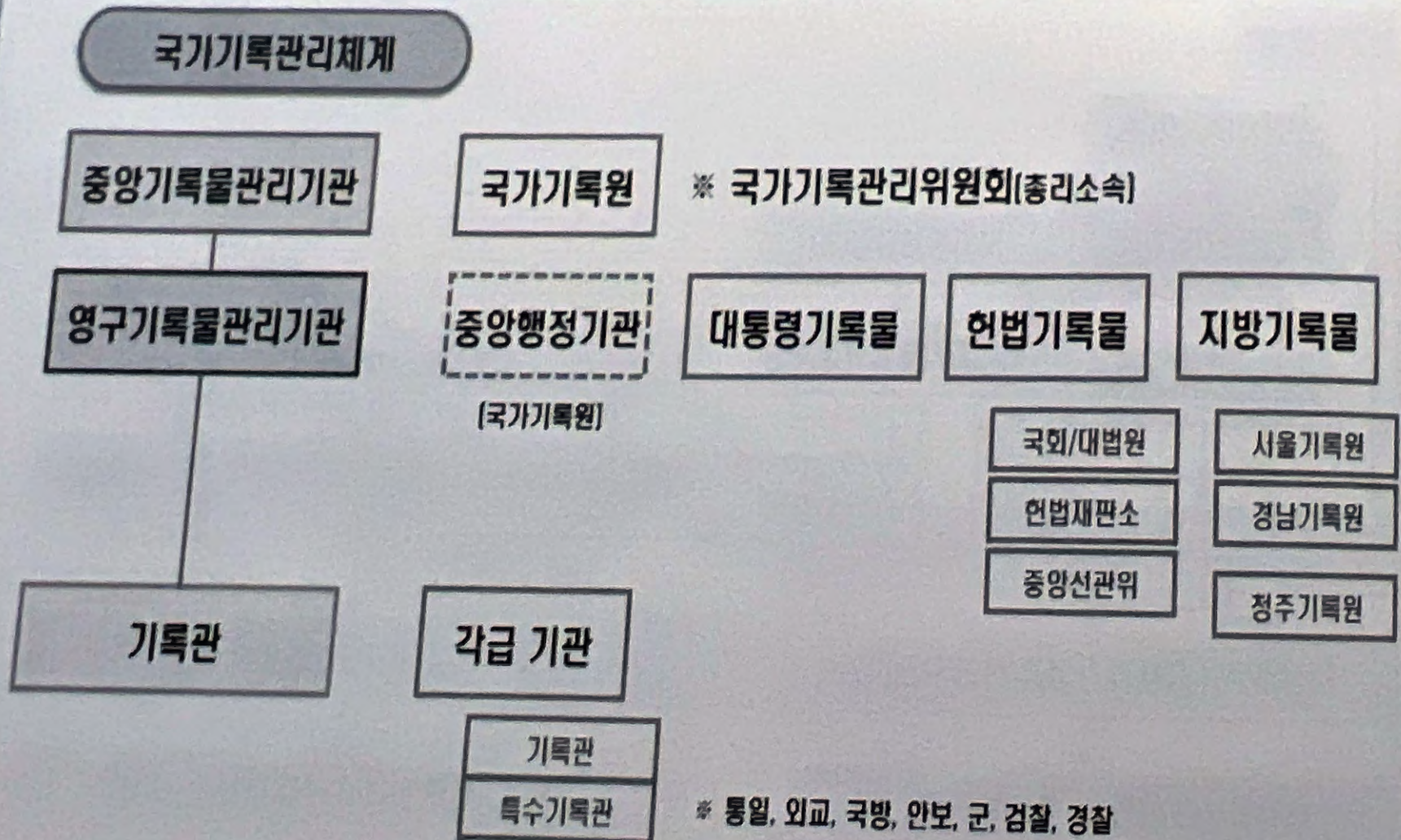
기타

- ❖ 민간기록 수집
- ❖ 기록문화 확산
- ❖ 벌칙

※ 제10장, 제12장

1. 기록물 관리의 이해

1-6. 국가기록관리 체계



1. 기록물 관리의 이해

1-7. 기록관리의 목적

- ❖ 업무표준화로 효율성 제고
- ❖ 조직의 지식정보 축적
- ❖ 사업안전성 제고

업무
활동 지원

- ❖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
- ❖ 유사업무 신속 대응 가능
- ❖ 사업추진 일관성 제고

책임행정
지원

- ❖ 기관 홍보 자료 활용
- ❖ 분쟁 시 증거자료 활용
- ❖ 기관의 재산 보호 등 증빙자료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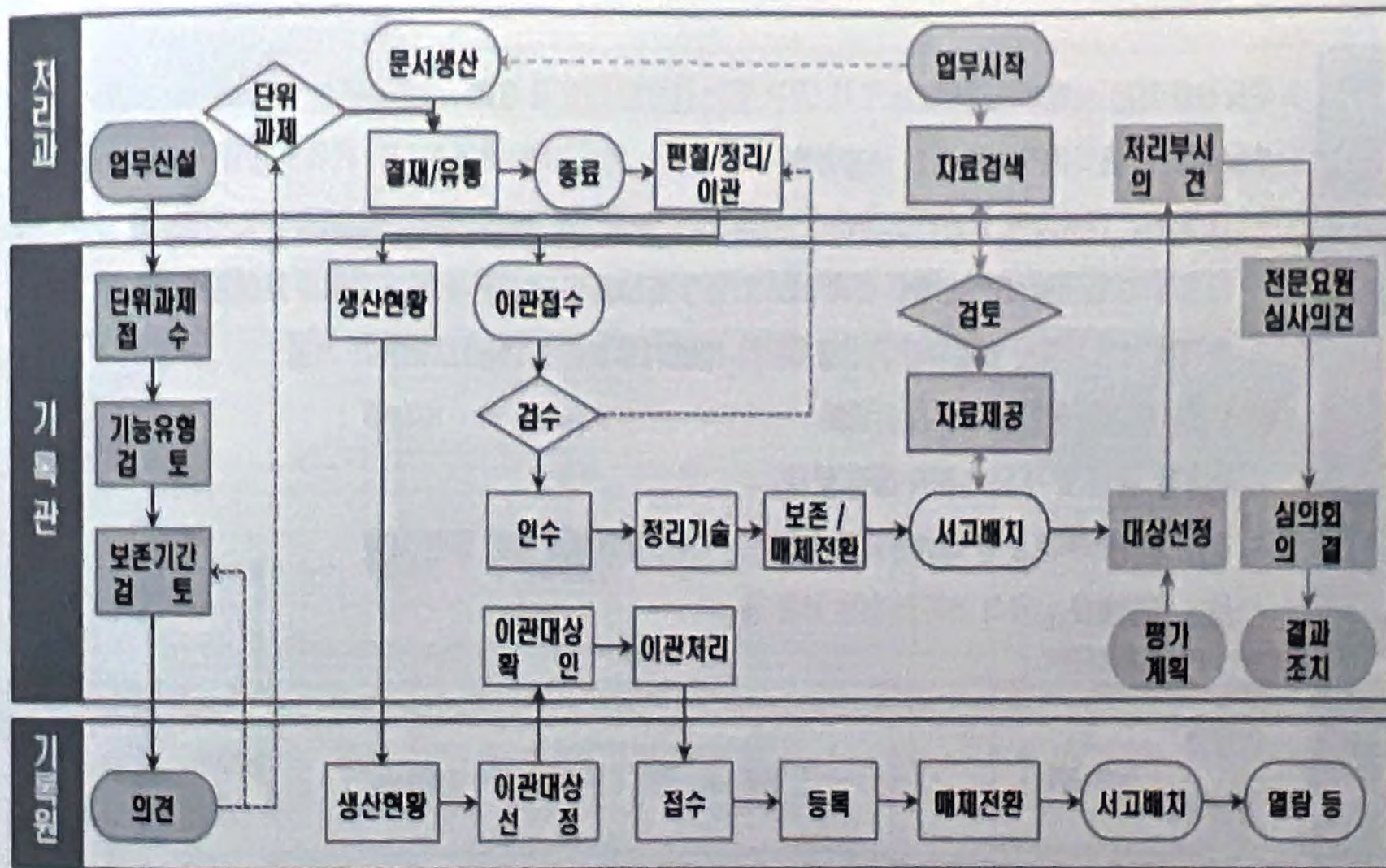
기관의
이익보호

역사기록의
보존활용

- ❖ 조직의 문화 콘텐츠 확보
- ❖ 기관 역사에 대한 증거 축적
- ❖ 임직원의 일체감 및 자긍심 고취

II. 단계별 기록물관리

2-1. 기록물관리 업무절차



II. 단계별 기록물관리

2-2.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기록의 생산 원칙

who

❖ 공공기관

Why

❖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

What

❖ 업무의 입안에서
종결까지 업무수행
과정, 결과

How

❖ 전자기록생산시
스템(업무과정에 기반
한 기록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기록은 생산 등록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습니다.

- ❖ 주요정책 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과 결과
- ❖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 ✓ 회의명칭, 개최기관,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 ✓ 대통령 및 총리참석회의, 주요 정책심의 및 당정 협의를 위한 차관급 이상 직위자 참석회의 등
 - ✓ 속기록 녹음기록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대통령참석 15년)간 비공개 가능
- ❖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 ✓ 대통령, 총리 및 주요 기관장 참석 행사
 - ✓ 주요 외국인사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조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 최초 출현물로 시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등

- ❖ 간행물
- ❖ 행정박물

II. 주요 단계별 기록물관리

2-3. 기록물의 분류

BRM과 기록관리기준표

개념

- ❖ 조직, 예산, 기록관리 등 분야·기관별로 운영되던 분류체계를 통합,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한 분류체계
- ❖ 단위과제 기본정보의 공유로 부처간 효율적 협업 달성
- ❖ 업무처리 절차의 시각화, 상호 공유로 지속가능한 업무처리절차 효율화 도모
- ❖ 단위과제와 관리과제 맵핑으로 업무성과 평가의 효율화 달성

구조



기록물의 평가심의

정의

- ❖ 생산당시 부여된 보존기간이 경과된 후 해당 보존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 ❖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소멸된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
- ❖ 제한된 자원으로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환경 구축 가능

특징

- ❖ 3심제 도입(처리과 의견- 전문요원 심사 - 평가심의회 심의)
- ❖ 기록물관리 기관에서만 폐기 가능
- ❖ 준영구 기록물의 주기적 재평가 (준영구 70년(동종대량 50년))

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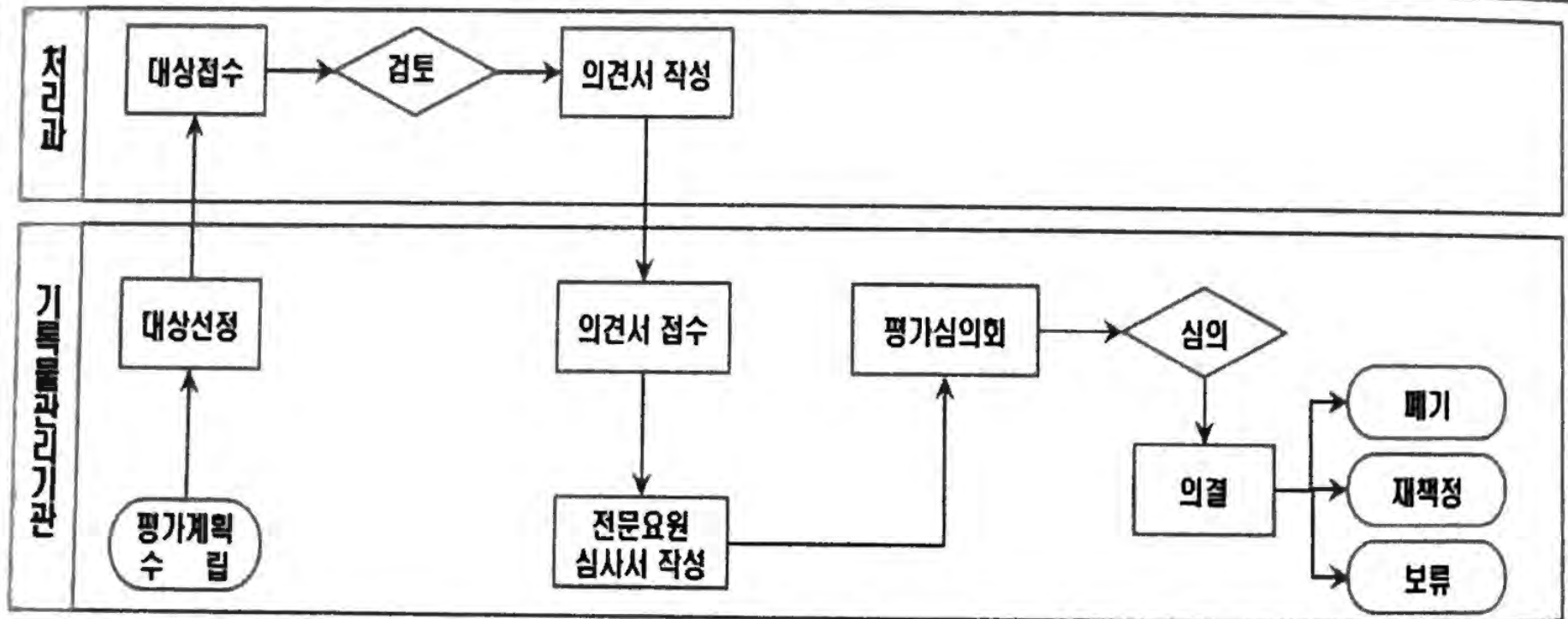
- ❖ 기록물 평가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보장
- ❖ 기관 내부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공무원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
- ❖ 반드시 심의 10일 전에 평가자료 제공으로 심의의 내실 확보

기록물평가의견서

심의회위원장

(서명)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연도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	처리과 의견		전문요원심사		심의회 의결	
				의견	이유	의견	이유	의견	이유



특징

- ❖ 3심제 도입(처리과 의견- 전문요원 심사 - 평가심의회 심의)
- ❖ 기록물관리 기관에서만 폐기 가능
- ❖ 준영구 기록물의 주기적 재평가(준영구 70년(통종대량 50년))

심의회

- ❖ 기록물 평가심의회 공정성 및 객관성 보장
- ❖ 기관 내부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공무원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
- ❖ 반드시 심의 10일 전에 평가자료 제공으로 심의의 내실 확보

史不記過 其罪殺之

15

II. 단계별 기록물관리

2-5. 기록물 평가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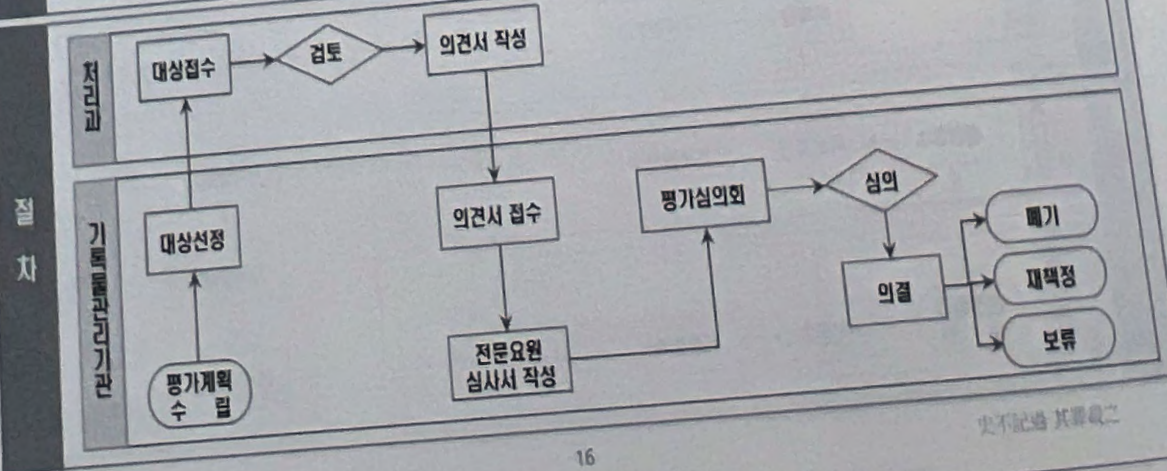
기록물평가의견서

심의위원회

(서명)

기록물 분류번호	생산 연도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	처리과 의견		전문요원심사		심의회 의결	
				의견	이유	의견	이유	의결	이유

평가시식



史不記過 其罪殺之

16

관리내용

- ❖ 관리 지원
 - ✓ 보존에 필요한 시설 정비
 - ✓ 위탁관리 가능
- ❖ 점검
 - ✓ 관리상황 매년, 보존상

IV. 기록관 설치 및

설치근거

- ❖ 공공기록물법 제3조
 - 공공기관운영에 관
- ❖ 공공기록물법 시행

주요업무

- ❖ 기록관 성격
 - ✓ 영구기록물관리
- ❖ 주요업무
 - ✓ 기관의 기록
 - ✓ 기관이 생산
 - ✓ 입양 및 실

집고사항

- ❖ 이관 대상
 - 입양 상

Ⅲ. 단계별 기록물관리

2-6. 민간기록물의 관리

민간기록물 관리

법정기록

- ❖ 공공기록물법 제 10장
 - ✓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 ✓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관리기록

- ❖ 지정 대상 및 절차
 - ✓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 정보 중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관리
- ❖ 관리 지원
 - ✓ 보존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가능[예산범위 내]
 - ✓ 위탁관리 가능
- ❖ 점검
 - ✓ 관리상황 매년, 보존상태 2년 1회

IV. 기록관 설치 및 주요업무



3-1. 아동권리보장원 기록관

설치근거

- ❖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타공공기관”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호

주요업무

- ❖ 기록관 성격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록관(영구기록물 관리관)
- ❖ 주요업무
 - ✓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법 제13조)
 - ✓ 기관이 생산한 영구기록물의 관리 (시행령 제40조 제2항)
 - ✓ 입양 및 실종아동 관련 기록물 관리 (입양특례법(개정) 부칙 제14조)

참고사항

- ❖ 이관 대상 및 기록물의 범위, 이관 시기 등 명확한 기준 필요
 - ※ 입양 성립 후 1년간 시후관리 기간 필요



04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김 건 (전북대학교 교수)

입양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잃어버린 시간의 기록을 찾아서 -

발제자: 김 건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2023.07.17.



CONTENTS

- ☑ 1. 기록물 보존과 활용의 당위성 및 타당성
- ☑ 2. 입양관련 기록물 현황과 과제
- ☑ 3. 기록물 보존과 활용 관련 법령 검토
- ☑ 4. 기록물 보존과 활용의 방향성
- ☑ 5. 핵심적인 실무적 실행방안 : 물리적 공간
- ☑ 6. 핵심적인 실무적 실행방안 : 전자적 공간
- ☑ 7. 향후 단계별 추진방안
- ☑ 8.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 기록물 보존과 활용의 당위성 및 타당성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화해의 첫걸음은 숨기거나 보탬이 없는
진실된 기록관리에서 시작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해주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 입양관련 기록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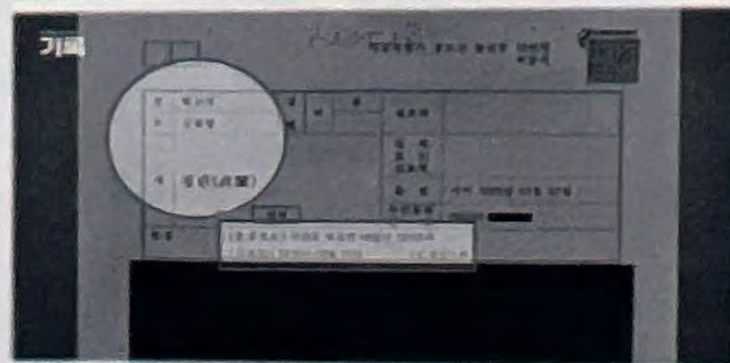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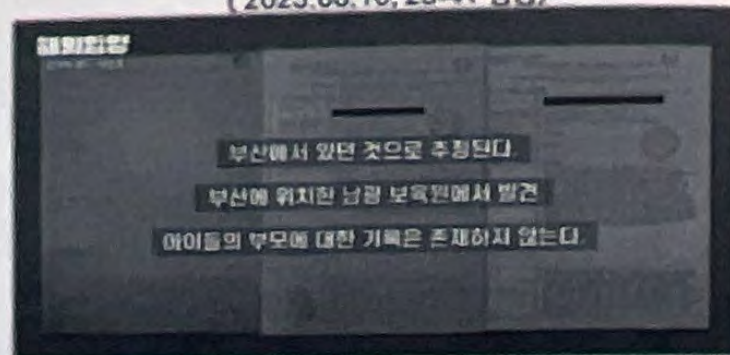
[한국일보 YouTube] 미국에 입양됐다 친부모 찾아 한국 온 로라씨 이야기
(2021.11.18, 04:30 업로드)



- 가정식으로 운영했던 조산원 등 소규모의 기관에서 관리·보존되었던 기록은 대부분 소멸
- 입양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친부모가 동의를 해야만 입양인에게 친부모의 정보 제공

✓ 입양관련 기록 위변조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23.06.10, 23:41 방송)



- 고아로 등록되면 빠른 입양 및 수수료 수령 가능
- 부모 및 출생지의 정보가 있었지만, 입양기록을 위변조하여 고아로 등록

2. 입양관련 기록물 현황과 과제

✓ 보존서고 (물리적 공간) 현황 및 과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2년 후 입양기관으로부터 원본 이관 확정
-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된 기록물은 1만 8,000천권, 이관 안된 기록물은 약 140만권 이상으로 추정
- 2023년 6월 기준, 문서고 만고율 90.8%로 보존공간의 수용 능력 부족

아동권리보장원
문서고
(6층)



✓ 시스템(전자적 공간) 현황 및 과제

- 2022년 기준, 강릉시청, 광주시청, 보건복지부, 선한사마리원, 해성보육원 등에 이관된 입양기록을 전산화하여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메타데이터(51개 항목)를 탑재하고, 탑재 자료는 별도 외장하드 보관 중 (ACMS는 업무용으로 시스템 담당자만 접근가능)
- 입양 등 아동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의 기록의 4대 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록관리체계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 입양정보공개청구 이외에 입양인과 인양관계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부재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물 정리 및 메타데이터 DB화 부족

ACMS: Adoption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3. 기록물 보존과 활용 관련 법령 검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023.06.30 국회 본회의 통과, 2년 유예기간 후에 시행

제15조(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및 입양 전 아동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뒤 그 원본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됨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입양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7호, 시행 2019.07.16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시행 2022.12.30

제25조(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① 입양기관의 장은 ...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양기록을 이관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그 입양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16.>

4. 기록물 보존과 활용의 방향성

방향성 반성과 포용으로 과거를 마주하고, 진실로써 현재와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
-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도의 개편과 물리적·전자적 공간의 구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 「국내입양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제도적 장치 마련(2023.06.30)

보존 : 입양자료를 기록으로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록관리체계

- 물리적 공간 : 문서고 확장 (현 만고율 90.8%)
 - 2년의 유예기간 후, 폐업시설·입양기관·지자체 등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관될 기록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 전자적 공간 :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증거적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적용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활용 : 입양기록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 플랫폼

- 물리적 공간 : 교류·문화·전시 공간
 - 국내외 입양인과 입양관계인이 상봉·교육·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인프라 마련
- 전자적 공간 :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 국내외 입양인과 입양관계인이 입양기록 확인, 정보공개 청구 등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5. 핵심적인 실무적 실행방안 : 물리적 공간

AS-IS

✓ 아동권리보장원 문서고 (6층)



- 아동권리보장원 문서고 만고율 90.08%(약 1만 8,000권)
- 입양기관(25만), 폐업시설(5만), 지자체(4만), 아동 관련 현업시설(107만) 등 약 140만권 이상의 기록물 추가 이관 예정

T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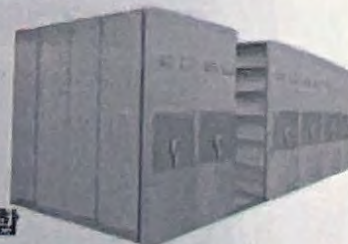
현업시설 기록물도 함께 이관할 경우
60,000㎡ (12,000평) 정도의 면적 필요

'기록정보센터'

문서고 공간

150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
45,000㎡ (9,000평) 확장 필요

※ 문서 및 사창기 기록물 등 모두 포함
※ 향은·향습·향비·향경적응·향비등 보존설비 포함



만남 공간

국내외 입양인, 입양관계인,
담당자가 서로 만나서
교류·소통·상담할 수 있는
공간 필요



교육 공간

한국의 역사·문화·언어
등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 필요



체험 공간

입양 등 아동 관련 행사나
전시를 치를 수 있는
공간 필요



5. 핵심적인 실무적 실행방안 : 전자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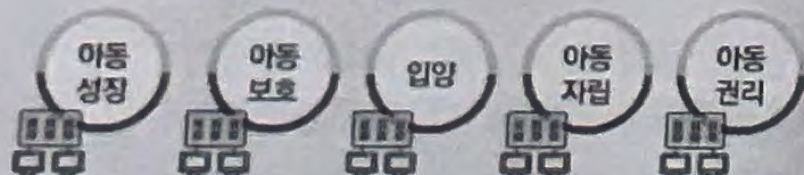
AS-IS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 업무용 시스템으로, 시스템 담당자 이외에 접근 제한됨
- 이관된 입양기록에 대한 51개 항목의 메타데이터만 입력
- 신상카드는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디지털화된 자료들도 보관되어 있지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 ↳ 이관기록물의 증거적 가치를 위한 기록관리체계 부재

✓ 원내 업무 시스템

- 원내 업무 시스템들은 연계 및 연동이 원만하지 않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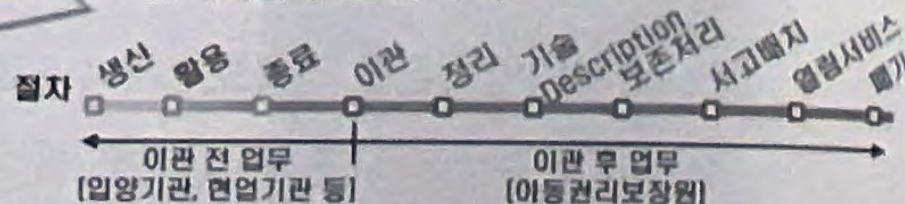


TO-BE

클라우드 기반 아동권리보장관련 기록관리 및 정보서비스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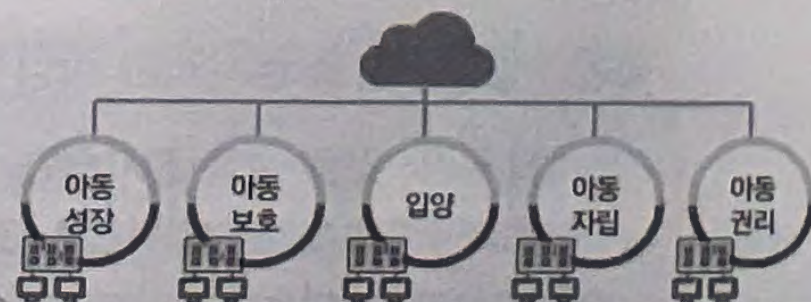
기록관리 도입

-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한 '기록관리프로세스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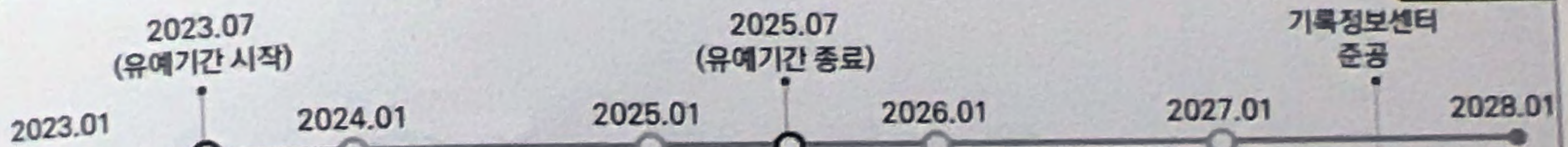
-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컴퓨팅 자원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 아동권리보장원 내 업무 시스템들 간 연계 및 연동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

- 국내외 입양인과 입양관계자(친부모, 양부모 등)이 신분만 확인된다면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로 설계

7. 향후 단계별 추진방안



✓ 물리적 공간 (기록정보센터)

'23.5~'24.2
타당성 연구 및
예비타당성

'24.3~12
설계

'25.1~'27.6
건설 및 시공

✓ 전자적 공간 (기록관리시스템)

'23.5~12
정보화계획수립

'24.1~9
ISP 설계

24.10~12
기재류심사

'25.1~
기록관리시스템 /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클라우드화, 업무시스템 연계 및 연동)

✓ 기록물 정리·이관

'23.5~12
입양기록물
정리 및 기술
(기록물의 위치파악
및 확인·식별)

'24.1~
기록물 정리

'24.1~
임시서고(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문의)에 이관

'27.6~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

8.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기대효과

- 기록정보센터의 물리적·전자적 공간을 통해 국내외 입양인에게 있는 그대로 입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기록 정보에 기반하여 보호자 없는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본래의 목적 달성

✓ 파급효과

-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약자 복지 강화 등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 책무 수행의 시작점
- 아동의 권리 증진을 기록의 증거적 가치로써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 비전을 기록의 역사적 가치로써 인식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 확립

감사합니다!



**국가적 입양 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